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75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문수 · 문금주 · 박균택
김한규 · 정진욱 · 정준호
백승아 · 전진숙 · 김우영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도의회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회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통합 창원시의 선례에 비추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평균인구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구위원을 2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에는 광역시·도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통합 전 광역시의원지역구와 같거나 겹치는 시·도의원지역구에 한정한다)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의 시·도의

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② (생략) <u><신 설></u></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p>	<p>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에는 광역시·도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통합전 광역시의원지역구와 같거나 겹치는 시·도의원지역구에 한정한다)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2명으로 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 ----- ----- -----</p>

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
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
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생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